

노인학대 현장에서 자기결정권 지원체계의 한계

민진흥*

[목 차]

- | | |
|----------------------|------------------------------|
| I. 노인인권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 III.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방안 |
| 1. 노인인권 | 1.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안 마련 |
| 2. 자기결정권 | 2.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적용 |
| II.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 | 3.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
| 1. 가정학대 | |
| 2. 시설학대 | |

[요 약]

노인의 인권문제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노인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이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안 마련,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사용,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노인학대, 자기결정 지원체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I. 노인인권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1. 노인인권

노인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노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나 원칙 또는 행동계획이 제시되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기준이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982)이다. 이 계획은 고령화, 노인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지침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도구이며, 인구의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고령화행동계획에서는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 7개 하위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방향 62가지를 권고하고 있다.¹⁾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준은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이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결의 46/91)에서 채택되었으며,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5개항으로 구분하여 총 18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²⁾

세 번째로 제시된 기준은 마드리드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이다. 마드리드국제고령화행동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존엄을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그들의 사회에 참여를 계속하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서문, 행동을 위한 권고, 이행과 후속조치,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에 해당하는 행동권고 부분에서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등 3가지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그 아래 18개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행동지침을 권고하고 있다.³⁾

1) 보건복지가족부(2000).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 Ibid.

2. 자기결정권

노인인권 영역에서의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국가로부터 노인인권이 보장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또는 가정에서 노인학대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노인의 인권문제는 비제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이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활환경과 관련한 행동이나 목적을 선택하는 행위이다. 자기결정권은 일반적으로 자율성이란 용어로도 표현되며, 인간으로서 의지, 독립성, 자유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⁵⁾ F.P. Biestek은 자기결정권을 인권 중 가장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설명하였고, F.E. McDermott는 자기결정권을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가치구조라고 하였다.⁶⁾ 결국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가족부(2002).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4) self-determination의 의미는 주로 정치학이나 국제법적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권의 주체로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언급할 경우 'autonomy', 'individuals autonomy' 또는 'personal autonomy'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5) 문인숙 외 (1985), 「임상사회복지학」, 서울: 집문당, pp. 45-66.

6) Ibid.

II.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

1. 가정학대

가정학대는 학대피해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 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⁷⁾

노인인권 영역에서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기방임일 것이다. 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자기방임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1994년 13.6%에서 2014년 23.0%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기방임사례도 2010년 196건(3.9%)에서 2015년 622건(10.1%)으로 증가하였다.⁸⁾ 자기방임사례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며,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⁹⁾

자기방임사례의 대표적인 행위는 노인 자신이 의료적 개입을 거부하거나, 생활 공간에서의 위험상황에서도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 노인 스스로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관련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들로 요약할 수 있다.¹⁰⁾

자기방임사례의 경우에 자기방임으로 인한 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자기방임사례에서 자기결정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방임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방임의 요인에 대하여 주로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¹¹⁾

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iv.

8) Ibid, p. 27.

9) 이민홍·박미은(2014), 한국 고령 독거노인의 자기방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pp. 123-142.

10) 우국희(2008), 노인학대 유형으로서 자기방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40, pp. 200-202.

1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pp. 16-17.

- ① 신체·의학적 요인으로 우울증, 신체 기능의 제한, 중풍, 알콜중독, 약물남용 등이 해당된다.
- ② 영양학적 요인은 비타민D, E 및 아미노산의 부족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③ 인구학적 요인은 부정적인 생애사건, 배우자 및 자녀의 사별, 독거 등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 ④ 사회경제적 요인은 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득수준,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고립, 경제적 의존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 ⑤ 병전성격(premorbid personality)요인은 불친절한 성격, 고집 센 성격, 의심 많은 성격, 지배하려는 성격 등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기방임의 결과가 본인의 주체적 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질적 문제로 인한 결과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자기방임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기능이 상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전제하려는 경향이 있다.¹²⁾ 그밖에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노인학대 영역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치매나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의사결정능력이 낮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성적학대가 있다.

2. 시설학대

시설학대는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¹³⁾ 노인의료복지시설,¹⁴⁾ 노인여가복지시설,¹⁵⁾ 재가노인복지시설,¹⁶⁾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은 입소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인권의 주요 실천 장이기도 하지만 한편, 지리적·공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12) Ibid.

13)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기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14)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15)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다.

16)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기타 재가 서비스가 있다.

분리되어 있어 노인인권 침해 또는 학대가 발생할 여지도 함께 보유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시설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에서 노인복지 시설 생활노인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설 입·퇴소 결정, 일상생활에서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¹⁷⁾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보호자가 그 선택과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¹⁸⁾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노인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노인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입소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설 내 생활 규칙 및 입·퇴소 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고, 대부분 보호자에 의하여 시설에 입·퇴소가 결정되며, 시설 내 생활노인 본인이 원하는 취미 및 여가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고 투표를 강요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⁹⁾ 그밖에 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자기결정권 침해 상황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개인물품 소유와 관리 및 금전관리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② 시설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③ 사생활보호, 종교행위,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④ 시설 내 이성교제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17) 한국노인복지증앙회(2013),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 보건복지부. p. 12.

18) Ibid. p. 15.

1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노인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미발행 문서.

- ⑤ 생활노인의 개별적 서비스 목표와 서비스 계획 시 생활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 ⑥ 생활노인의 의복 및 헤어스타일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Ⅲ.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방안

1.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안 마련

노인학대 현장에서 학대피해노인들 중 치매환자는 27.0%이며, 기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학대피해노인 3,818명 중 3,620건으로 나타났으며,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도 15.0%로 나타났다.²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으며, 특히 자기방임노인이나 치매 또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임상적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계획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고 할 때 자율성은 의사결정능력을 의미하며, 의사결정능력은 정신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정신능력은 능력의 유무를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하거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때에는 다양한 환경과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²¹⁾

영국에서는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하여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s, 2005)을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천강령(Mental Capacity Act 2005 Code of Practice)을 통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의료나 재산과 관련한 문제에 국한된 반면, 영국의 정신능력법은 의료적 문제나 재산과 관련한 결정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이나 신변에 관한 결정까지도 법적인

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xxi.

21) 제철웅(2011), 요보호 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민사법학, 56. pp. 277-331.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²²⁾

2.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적용

가정학대 영역에서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학대피해노인의 경우에 다른 성인들과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수 없고, 의사결정능력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 상실과정에 따른 적절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현장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성년후견제도의 인식 개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대피해노인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설학대 영역에서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설입소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있어도 입소시간이 경과되면서 보호자 역할에 소극적인 보호자들이 많으며, 보호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상황에 따른 역할 축소 내지는 역할 거부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입소초기에는 적극적이었다가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는 보호자들도 있어서, 입소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며, 시설 입장에서 보호자들의 연락두절이나 소극적인 개입으로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보호자들이라고 해도 입소노인이 위급할 시 입소노인의 입장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는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입소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입소 시 보호자 중 한 명을 법정 후견인으로 선정하고, 보호자 중 후견인을 정하지 못할 경

22) Mental Capacity Act 2005 Code of Practice(2007), pp. 16-18

우에는 공공 후견인을 법정 후견인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기방임사례의 경우 자기방임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방임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된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방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방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정신능력에 대한 정확한 사정, 자기방임노인의 생애사적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²³⁾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방임을 하나의 학대로만 간주하고, 자기방임노인을 일종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였다. 그러나 자기방임의 문제는 학대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자기방임노인에게 적합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개입 기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8. 1. 10. 심사일: 2018. 1. 17. 게재확정일: 2018. 1. 29.

23) 우국희(2013), 자기방임을 이해하는 대안적 관점에 대한 고찰: 노인학대에서 불결의 문제로, 비판사회정책. vol.-No.42. p.200.

■ 참고 문헌 ■

- 문인숙 외 (1985), 「임상사회복지학」, 서울: 집문당, pp. 45-66.
- 보건복지가족부(2000),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보건복지가족부(2002),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iv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pp. 16-1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노인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미발행.
- 제철웅(2011), “요보호 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민사법학, 56. pp. 277-331.
- 이민홍·박미은(2014), “한국 고령 독거노인의 자기방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pp. 123-142.
- 우국희(2008), “노인학대 유형으로서 자기방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40, pp. 200-202.
- 우국희(2013), “자기방임을 이해하는 대안적 관점에 대한 고찰: 노인학대에서 불결의 문제로”, 비판사회정책. vol.-No.42. p.200.
- 한국노인복지중앙회(2013),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 보건복지부. p. 12.
- Mental Capacity Act 2005.
- Mental Capacity Act 2005 Code of Practice(2007), pp. 16-18.

[Abstract]

The Limitation of Self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at the Social Work Field Placement for Elder Abuse

Min, Jin-Hong

Seoul North Elder Protection Agency

Human rights issues in the elderly are often occurred in private areas, so they can not be easily disclosed when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laws and systems to promote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but it is also necessary that each person enhances his/her own right and that the elderly can live independently as a person.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e preparation of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decision making ability, use of the adult guardianship, and professional service development.

■ Keywords: Support Systems for Victims of the elder abuse, Support System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 Systems of Ministry of Justice